
문서번호 : 15-08-긴조번호단-02
수 신 : 언론사 제위
발 신 :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, 긴급조치피해자 대책위, (사)민청학련계승사업회
제 목 : [취재협조요청] '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' 기자회견 (사후 보도자료)_8. 24.(월) 10:30, 헌법재판소 정문 앞
전송일자 : 2015. 8. 24.(월)
전송매수 : 총 2매

<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' 기자회견 (사후 보도자료)>

대법원이 문제다

1.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, (사)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오늘 청구인을 백기완 선생님이로 하여, 헌법재판소에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.
3.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, ①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제외함으로써 반감되었으며, ② 특히 최근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절차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, 그리고 법관 위주의 골품제화 함으로써 대법관의 보수화뿐만 아니라 판결에서도 그 영향을 비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, ③ 최근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 상고법원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, 정책 및 정치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30여년 기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충돌이 있어왔고 더욱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.
4.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구동성으로 긴급조치가 그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결정하였다. 그럼에도 지난 대법원(대법원2015. 3. 26. 선고 2012다48824 판결1)은 단 6줄로서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'대통령 박정희 1)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위헌이나 발령행위는 위헌이 아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. 특히 이번 긴급조치 대법원 판결을 한 재판부는 대법원 민사제3부인데 재판장 박보영, 주심 권순일, 민일영, 김신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, 민일영 대법관은 긴급조치 제1호 전원합의체 판결(2010.12.16.선고 20-10도5986판결)의 일원으로 참여한바 있으며, 위 재판부의 민일영, 박보영, 김신 대법관 또한 긴급조치 제9호 전원합의체 위헌결정

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'고 판시한 이래 이 사건 백기완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을 판결(2015. 7. 23. 선고 2015다212695판결) 하였습니다.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일부 인용한 판결마저도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.

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일찍이 2013.3.21. 헌법재판소가 ' 긴급조치 제1, 2,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, 표현의 자유, 집회·시위의 자유,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,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'고 선고한 위헌 결정 및 그 취지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.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(2010.12.16. 선고 2010도5986판결) 또한 같은 취지였음에도 이렇듯 '긴급조치는 위헌이란 그 발동행위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'고 판시한 것이다.

5. 물론, 재판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1997.12.24.96헌마172·173(병합), 즉 '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'로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또한 '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'를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그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.

6. 따라서 우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 사건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번 계기로 30여년 이상 지속되어오면서 노정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모색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.

2015년 8월 24일

민변 긴급조치 변호단
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
(사)민청학련계승사업회

(2013.4.18. 선고 2011초기689.결정)에 참여한바 있습니다.